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73,804,352	11,214,131
일반회계	300,883,625	9,026,509
특별회계	72,920,727	2,187,622
공기업특별회계	34,370,119	1,031,104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4,370,119	1,031,104
기타특별회계	38,550,608	1,156,518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	20,890,528	626,716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2,035,000	361,050
농공지구조성사업	304,800	9,144
의료급여기금운영	1,502,036	45,061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816,244	24,487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3,000,000	90,00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,000	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 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388,479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2,910,948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